

	생활관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4. 01. 06
		최종개정일자	2022. 04. 01
		담당부서	생활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 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생활관의 명칭은 목포과학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업무관리)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이 총괄한다.

제4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 기간은 학칙에 정한 수업일수로 하되, 생활관장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관 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숙소 및 시설물의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관생활동) 관생의 활동은 학문정진 및 교양 함양을 위한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7조(관생수칙) 관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2장 조 직

제8조(조직) ①생활관에 생활관장을 둔다. 생활관장은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생활관의 운영 및 관생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③생활관 행정 및 시설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④생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활관생으로 구성하는 자치위원회를 두되, 그 선발 및 운영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생활관장 등의 직무) ①생활관장은 생활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관생의 생활교육을 지도한다.

②지도교수는 생활관장을 보좌하며,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생활관 직원은 생활관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생활관생 선발 및 호실 배정

2) 생활관생 생활지도

3) 생활관생 입·퇴관 관리

4) 생활관 시설물관리

5) 기타 생활관 관련업무

6) 생활관 자치위원회는 생활관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점호 및 시설물 관리, 지시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상담교수) 상담교수는 생활관생의 상담 및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생활관장이 총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생활관장, 행정지원처장, 교무입학처장, 식품영양과 교수 1인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학생자치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생활관 직원,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④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생활관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②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③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장 입관 및 퇴관

제13조(입관자격) 생활관에 입관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에 한한다. (단, 국내·외 교류 등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 재학생이 아닌 자도 입관할 수 있다.)

제14조(입관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할 수 없다.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② 생활관에서 퇴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③ 정신질환자,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활동성)

④ 휴학중인 자

- ⑤ 해당 학기 등록을 필 하지 않는 자
- ⑥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15조(관생선발) ①생활관에 입관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 선발 기간 중에 입관원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활관장은 관생 선발기준에 의거 입관원서를 심사한 후 생활관 홈페이지에 입실허가를 공고한다.

③관생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 재학생
- 2) 장애인
- 3) 원거리 입학생
- 4) 학업성적 우수자
- 5) 생활관 상별점수
- 6)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가계 곤란 자)
- 7) 생활관장 및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⑤관생 선발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실시한다. (단,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관후보 순위에 따라 추가선발 할 수 있다.)

제16조(입관등록)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한 입관 등록 절차를 마치고, 입관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관하지 않은 학생은 입관을 취소한다. (단, 실습 등 학업과 관련되어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퇴관처분) 생활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 생활관장은 퇴관처분을 할 수 있다.

- 1) 관생수칙을 위반한 경우
- 2) 생활관비를 미납한 경우
- 3)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 4) 생활관 별점을 초과한 경우
- 5) 제적(자퇴포함)된 경우
- 6)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8조(퇴관승인) 관생은 해당학기 중에 퇴관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관을 희망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퇴관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입관허가기간) 입관허가 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경비부담) 생활관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사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제21조(생활관비 책정)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2조(생활관비 납부)

- ① 생활관비는 학기 단위로 납부한다.
- ② 생활관비 납부기준은 < 별표 1 > 과 같다.
- ③ 생활관비 환불기준은 < 별표 2 > 와 같으며, 환불금액은 퇴관 일을 기준으로 한다.(단, 방학 중 생활관 이용에 따른 환불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생활관비 납부기간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생활관의 모든 이용자는 정해진 생활관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생활관비 징수 기준]

구분	입관전	입관일 이후 1/4이전	입관일 이후 2/4이전	입관일이후 3/4이전	입관일이후 3/4이후
관리비	전액		2/3	1/2	1/3
식비	입관일로부터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산정				
보증금	전액징수				

※ 10단위 이하 절사

[별표2. 생활관비 환불 기준]

구분	입관일 이후 7일이내	입관일 이후 1/4이전	입관일 이후 2/4이전	입관일 이후 3/4이전	입관일 이후 3/4이후
관리비	80%	60%	40%	20%	0
식비	① 퇴관일 다음날부터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학기 최종월에 퇴관할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③ 타지역 교육실습(2주이상) 대상자에 한하여 사전에 신청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환불한다.				
보증금	열쇠분실 개당 10,000원, 청소불량호실 1인당 10,000원, 비품손망실 전액				

※ ①퇴관 일에 점검 결과 비품 등이 손상되어 공동책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호실 관생전원에게 공제한다.

②10단위이하 절사